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운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, 기본원칙 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2)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 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3)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4) 문화유산보호활동 지원 (안 제9조)
- 5) 문화유산교육의 진흥 (안 제10조)
- 6) 문화유산돌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- 7) 재정지원과 표창 (안 제13조 ~ 안 제1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라 금천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, 기본원칙 (안 제1조 ~ 안 제3조)

○ 「국가유산기본법」에 따라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보호 정책의 원칙을 명시함

나)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(안 제7조 ~ 안 제8조)

○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

○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유산의 현황,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와 기록 작성을 근거함

다) 문화유산보호활동 지원 (안 제9조)

라) 문화유산교육의 진흥 (안 제10조)

○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, 교육자료 개발,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 수립을 마련함

마) 문화유산돌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
○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함

바) 재정지원과 표창 (안 제13조 ~ 안 제14조)

### 3) 검토 의견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‘문화재’라는 명칭을 ‘유산’으로 통칭은 ‘국가유산’으로 변경함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·개정예 따라 금천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